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의원	우강호의원	소속	평창군의회
답 변 자	문화관광과장	일자	질의: 1999년 11월 29일 답변: 1999년 11월 30일
회 의	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(감사3일차)		

□ 질의요지

지방기념물 제49호 수항리사지 문화재보호구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데 보호구역 축소와 이곳을 유적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

□ 답변요지

- 지방기념물 제49호 수항리사지 문화재보호구역은 면적이 33,812㎡로 전체가 사유지이며, 1982년 지정한 후 영구시설물 설치가 제한되어 사유재산 침해문제가 대두되어 강원도에 보호구역축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지자체가 문화재이고, 석탑, 초석, 건물지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 등을 위해 축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이었음.
- 따라서 군에서는 동지역을 매입하여 유적지로 정비하고자 1998년부터 계속 매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을 지원요청(823백만원)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매입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음